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13호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곽봉호, 손석철 의원

3. 제정이유

○ 옥천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 산불방지 활동(안 제5조)

○ 산불방지 활동 지원(안 제6조)

○ 표창(안 제7조)

5.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산림보호법」 제33조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2. 산불진화 참여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표창)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